경운대학교 산학협력위원회규정

- 제1조(목적) 교육적 수요충족과 사회발전에 필요한 산학간의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경운대학교 산학협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제2조(조직)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항에 의하여 위촉한다.
 - ① 위원 및 위원장은 교직원, 대구、경북 관련기관의 부서장, 산업체 대표 및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, 각 학부(과)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 - ② 위원회 산하에 각 학부(과)별 또는 개별사업팀에 대응되는 산학협력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③ 산학협력 소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소위원장 및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소위원장 은 학(부)과장이 되며, 간사는 소속교수 중에서 선출한다.
- 제3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**제4조(회의)**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심의 , 의결한다.
 - 1. 산학공동기술 교육과정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산학공동 인력양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 - 3. 산학관련 교과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4. 학생의 현장실습 및 진로에 관한 사항
 - 5. 대학과 산업체간의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
 - 6. 교수의 산업체 현장연수 및 견학에 관한 사항
 - 7. 산업체 임직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
 - 8. 산학기술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- 9. 기술개발과제의 진행 및 개발에 관한 사항
 - 10.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11. 산업기술의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
 - 12. 산학협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
 - 13. 벤처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
 - 14.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
제6조(수당)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제7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.

2 제4편 위원회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